# 제8장
# 민원, 지적 · 토지관리, 민방위 행정

제1절 일반민원
제2절 지적 · 토지관리 행정
제3절 민방위 행정

# 제1절 일반민원

## 1. 종합민원실 운영

삼척시 종합민원실은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정부3.0에 걸맞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친절한 민원응대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실시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종합 민원실은 민원봉사과 6개 부서(민원, 가족관계등록, 토지관리, 지적, 지적정보, 지적재조사), 교통행정과 1개부서(건설기계등록, 자동차등록), 건축과 1개부서(건축물 관리), 세무과 민원창구 직원 2명, 도시디자인과(제증명) 1명, 지적공사 삼척시출장소 1명이 배치되어  총 5개과, 1공사 12개 창구로 운영되고 있고, 총39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 삼척시청 출장소가 운영되어 시금고 업무추진과 시민편익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삼척시청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정보 제공과 아울러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종합민원실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24시간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소외계층 민원방문 시 성실히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의식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전용 주차장 운영, 휴대폰 충전기 및 혈압측정기 비치, 민원전용 사무기기, TV 등을 설치하여 민원인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실시와, 개선사례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24』, 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사전심사 청구제 등 각종 민원 시책 홍보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민들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구축으로『시민중심! 행복 삼척』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 민원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현황

| 연도별 | 시 설 내 역 | 비 고 |
|---|---|---|
| 2013 | · 휴대폰 충전기 교체 : 3대<br>· 비상구급약품세트 비치 : 2점<br>· 자동혈압측정기 비치 : 1점<br>·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1대<br>· 화분 및 꽃꽂이 교체 비치<br>· 도서비치, 안마의자, TV, 비만도측정기 등 비치<br>·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 비치<br>– 팩스,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 전화기 등<br>· 110수화(화상)통역서비스 연계 창구 운영 | |
| 2014 | · 휴대폰 충전기 교체 : 3대<br>· 비상구급약품세트 비치 : 2점<br>· 자동혈압측정기 비치 : 1점<br>·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1대<br>· 화분 및 꽃꽂이, 블라인드 교체 비치<br>· 도서비치, 안마의자, TV, 비만도측정기 등 비치<br>·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 비치<br>– 팩스,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 전화기 등<br>· 110수화(화상)통역서비스 연계 창구 운영 | |

## 민원창구별 주요 민원업무 처리내역

①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여권
② 민원접수 / 어디서나 민원 / 민원1회방문처리 / 전자민원
③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④ 건설기계등록
⑤ 자동차등록
⑥ 세무(납세증명)
⑦ 취득세·등록세 신고
⑧ 지적측량 접수 등
⑨ 토지(임야)대장, 지적도면 교부
⑩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신청, 토지거래검인
⑪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청
⑫ 건축물대장 교부

## 2. 주민등록 관리

### 가. 주민등록 세대 및 인구현황

1987년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탄광촌과 농촌의 인구가 매년 3%정도 감소되고 있으며, 통합시 개청 당시 89,986명의 인구가 2014.12.31. 현재 72,314으로 17,672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시에서는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8년 이후 대규모 국책사업유치로 기업체 직원과 강원대학교 학생들의 전입으로 인구가 증가추세를 보이며, 2020년 인구 20만 늘리기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삼척시의 주민등록인구는 다음과 같다.

**2013년 읍면동별 인구현황(기준일 : 2013.12.31)**

(단위 : 세대, 명)

| 읍 면 별 | 세 대 수 | 인 구 수 | | | 비 고 |
|---|---|---|---|---|---|
| | | 계 | 남 | 여 | |
| 계 | 35,362 | 73,023 | 37,384 | 35,639 | |
| 도 계 읍 | 7,599 | 13,429 | 6,792 | 6,637 | |
| 원 덕 읍 | 3,338 | 5,976 | 3,137 | 2,839 | |
| 근 덕 면 | 3,266 | 6,116 | 3,155 | 2,961 | |
| 하 장 면 | 722 | 1,490 | 792 | 698 | |
| 노 곡 면 | 455 | 801 | 425 | 376 | |
| 미 로 면 | 977 | 2,115 | 1,096 | 1,019 | |
| 가 곡 면 | 427 | 767 | 384 | 383 | |
| 신 기 면 | 431 | 773 | 427 | 346 | |
| 남 양 동 | 4,342 | 9,676 | 4,765 | 4,911 | |
| 성 내 동 | 3,798 | 8,919 | 4,471 | 5,185 | |
| 교 동 | 4,870 | 11,040 | 5,855 | 5,836 | |
| 정 라 동 | 5,137 | 11,921 | 6,085 | 4,448 | |

**2014년 읍면동별 인구현황(기준일 : 2014.12.31)**

(단위 : 세대, 명)

| 읍 면 별 | 세 대 수 | 인 구 수 | | | 비 고 |
|---|---|---|---|---|---|
| | | 계 | 남 | 여 | |
| 계 | 35,204 | 72,314 | 36,940 | 35,374 | |
| 도 계 읍 | 7,663 | 13,309 | 6,755 | 6,554 | |
| 원 덕 읍 | 3,380 | 5,985 | 3,132 | 2,853 | |
| 근 덕 면 | 3,206 | 5,975 | 3,078 | 2,897 | |
| 하 장 면 | 709 | 1,450 | 770 | 680 | |
| 노 곡 면 | 451 | 776 | 416 | 360 | |
| 미 로 면 | 980 | 2,091 | 1,082 | 1,009 | |
| 가 곡 면 | 426 | 759 | 380 | 379 | |
| 신 기 면 | 418 | 756 | 420 | 336 | |
| 남 양 동 | 4,245 | 9,349 | 4,614 | 4,735 | |
| 성 내 동 | 3,699 | 8,591 | 4,279 | 4,312 | |
| 교 동 | 5,074 | 11,975 | 6,281 | 5,694 | |
| 정 라 동 | 4,953 | 11,298 | 5,733 | 5,565 | |

### 나.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 전산장비 및 전산자료의 완벽한 정비·점검을 위하여 매년 4회(분기)에 걸쳐 읍면동 및 출장소별로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최고·공고·직권조치 등 행정절차에 의거 주민등록 사항을 중점 정리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정비·점검 병행추진으로 주민등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3. 외국인 등록

2014년말 현재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여행, 친지방문 및 거주, 구직 · 국제결혼 등을 목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적별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등록현황**

(단위 : 명/12.31기준)

| 연도별 | 계 | 중국 | 배트남 | 일본 | 대만 | 캄보디아 | 필리핀 | 인도네시아 | 기타 |
|---|---|---|---|---|---|---|---|---|---|
| 2013 | 760 | 151 | 150 | 33 | 12 | 21 | 28 | 240 | 125 |
| 2014 | 625 | 132 | 191 | 34 | 13 | 18 | 27 | 57 | 153 |

## 4. 여권 관리

삼척시 종합민원실 1번 창구에서 여권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와 신청서 접수 및 교부하고 있으며, 2005년도 1,893건에서 2010년도 3,529건으로 증가하였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2011년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여권의 보편화로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하게 여권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권신청 현황**

| 연도별 | 신청 건수 | 여권종류별 | | 관용 | 비 고 |
|---|---|---|---|---|---|
| | | 단수 | 복수 | | |
| 2013 | 3,167 | 507 | 2,659 | 1 | |
| 2014 | 3,088 | 378 | 2,709 | 1 | |

## 5. 가족관계 등록 관리

### 가. 제적정보시스템 및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운영

2002.2.25. 호적 전산화 사업의 완료 후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제적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 2006.3.15부터 호적, 제적부 및 제재부의 전국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7.5.17 법률 제83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 1. 1시행된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에 의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개인 정보공개 최소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 나. 가족관계등록 인구현황

2014년 12월말 현재 삼척시의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는 173,465명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동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등록 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기 관 별 | 가족관계등록인구수 | 비 고 |
|---|---|---|
| 계 | 173,465 | |
| 본 청 | 54,032 | |
| 도계읍 | 32,135 | |
| 원덕읍 | 23,356 | 임원출장소 포함 |
| 근덕면 | 28,534 | |
| 하장면 | 8,506 | |
| 노곡면 | 5,983 | |
| 미로면 | 11,544 | |
| 가곡면 | 4,759 | |
| 신기면 | 4,616 | |

### 다. 제적 및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접수처리

제적 및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민원은 2013년 3,531건, 2014년 8,860건으로 2014년 민원이 증가한 사유를 살펴보면,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부모의 누락된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는 부모정보추가구성 정정건이 증가했으며, 가족관계등록신고 민원은 매년 비슷하며, 제적 및 가족관계등록 직권정정사건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적 및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민원 접수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적 및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연도별 | |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민원 | | | | | | | |
|---|---|---|---|---|---|---|---|---|---|
| | | 계 | 출생 | 사망 | 혼인 | 이혼 | 개명 | 정정 | 기타 |
| 2013 | | 3,531 | 465 | 525 | 293 | 119 | 181 | 1,705 | 243 |
| 2014 | | 8,860 | 437 | 592 | 300 | 138 | 208 | 6,959 | 225 |
| 연도별 | 기관별 | 계 | 출생 | 사망 | 혼인 | 이혼 | 개명 | 정정 | 기타 |
| 2013년도 | 본 청 | 1,691 | 375 | 264 | 224 | 102 | 148 | 437 | 141 |
| | 도계읍 | 637 | 39 | 85 | 24 | 7 | 18 | 430 | 34 |
| | 원덕읍 | 392 | 20 | 58 | 25 | 2 | 1 | 257 | 29 |
| | 근덕면 | 392 | 16 | 54 | 12 | 2 | 6 | 281 | 21 |
| | 하장면 | 126 | 2 | 23 | 3 | 4 | 4 | 85 | 5 |
| | 노곡면 | 62 | 2 | 8 | 1 | | 3 | 47 | 1 |
| | 미로면 | 95 | 4 | 19 | 2 | 1 | 1 | 60 | 8 |
| | 가곡면 | 92 | 5 | 4 | | 1 | | 80 | 2 |
| | 신기면 | 44 | 2 | 10 | 2 | | | 28 | 2 |
| 연도별 | 기관별 | 계 | 출생 | 사망 | 혼인 | 이혼 | 개명 | 정정 | 기타 |
| 2014년도 | 본 청 | 3,406 | 346 | 292 | 215 | 122 | 129 | 2,175 | 127 |
| | 도계읍 | 1,535 | 43 | 94 | 36 | 3 | 30 | 1,292 | 37 |
| | 원덕읍 | 1,041 | 18 | 68 | 24 | 12 | 19 | 873 | 27 |
| | 근덕면 | 1,356 | 15 | 68 | 13 | 1 | 11 | 1,234 | 14 |
| | 하장면 | 341 | 3 | 17 | 1 | | 12 | 304 | 3 |
| | 노곡면 | 299 | | 8 | 2 | | 1 | 283 | 5 |
| | 미로면 | 464 | 9 | 29 | 5 | | 5 | 407 | 9 |
| | 가곡면 | 197 | 2 | 9 | | | | 185 | 1 |
| | 신기면 | 221 | 1 | 7 | 4 | | 1 | 206 | 2 |

# 6.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

## 가. 민원1회 방문처리제 내실운영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며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원업무 처리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민원후견인 제도의 운영

분야별 지식이 풍부한 담당급 32명을 지정하여 복합민원 및 노약자, 장애인, 연소자등의 민원을 대행함으로서 민원의 접수에서 종료까지 민원처리 상황을 수

시 통보하고,

실무종합심의회 참석 및 민원서류의 보완, 타기관 협의 등 제반절차를 수행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여 One-Stop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나 해당 실과소에서 대부분 처리되며 복잡한 업무처리과정으로 인해 그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특성상 신속성과 상충되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민원후견인제도 운영현황**

(단위 : 명, 건)

| 연도별 | 후견인수 | 실제활동 후견인수 | 처 리 실 적 | | | | 비고 |
|---|---|---|---|---|---|---|---|
| | | | 소 계 | 수 용 | 거 부 | 처리중 | |
| 2013 | 32 | 32 | 0 | | | | |
| 2014 | 32 | 32 | 0 | | | | |

### (2)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위원장으로,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관련부서별 처리방안 검토 및 기타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의견을 필요시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운영실적을 보면 2013년도 27회, 2014년도 23회 개최하였다.

### (3)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삼척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에 의거 총 18명(공무원 17명, 외부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 사안과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의 민원처리부서 지정, 법령검토 및 제도개선 등으로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민원1회방문처리 창구를 통하여 복합·단순·고충민원의 접수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민원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분 / 연도별 | | 접 수 | 처 리 (해결) | 처 리 불 가 | | | | | |
|---|---|---|---|---|---|---|---|---|---|
| | | | | 계 | 불 가 | 반 려 | 취 하 | 이첩·이송 | 기 타 |
| 복합 | 2013 | 2,059 | 1,841 | 218 | 2 | 73 | 138 | | 5 |
| | 2014 | 1,818 | 1,639 | 179 | 2 | 66 | 103 | | 8 |
| 단순 | 2013 | 13,377 | 13,097 | 280 | 19 | 69 | 103 | 5 | 84 |
| | 2014 | 14,792 | 14,489 | 303 | 19 | 78 | 93 | 9 | 104 |
| 고충 | 2013 | 238 | 213 | 25 | 2 | | 2 | 17 | 4 |
| | 2014 | 263 | 231 | 32 | 6 | | 7 | 13 | 6 |

**분야별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 연도별 | 계 | 문화 공보 | 회계 | 주민 생활 지원 | 사회 복지 | 민원 봉사 | 환경 보호 | 지역 경제 | 농업 정책 | 산림 녹지 | 건설 | 도시 | 교통 행정 | 건축 | 해양 수산 | 상하 수도 | 기타 |
|---|---|---|---|---|---|---|---|---|---|---|---|---|---|---|---|---|---|
| 2013 | 2,453 | 16 | | | 472 | | 47 | 12 | 29 | 144 | 199 | 605 | 10 | 330 | 553 | 19 | 17 |
| 2014 | 1,960 | 16 | | | 474 | | 69 | 8 | 25 | 139 | 176 | 494 | 24 | 259 | 226 | 23 | 27 |

## 나. 민원인 제출서류 최소화

민원인에게 법령상 규정된 구비서류 외에는 요구할 수 없으며, 각 기관은 행정정보공공이용대상, 기관 내부확인 가능한 자료 목록 등을 민원실에 게시함으로서 시민과 공무원이 상호 정보공유를 해 왔다.

## 다.『민원처리기간 자체단축』확대 운영

「민원1회 방문처리제」시책으로 법정처리기간 2일이상인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처리기간 40%이상 자체 단축을 목표로 하여 2013년도 295종, 2014년도 314종을 자체 단축처리기간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의 법정처리기한이 남아 있음으로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함으로써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인·허가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운영 현황**

(단위 : 건)

| 연도별 | 계 | 문화 | 총무 | 회계 | 주민 | 사회 | 민원 | 환경 | 관광 | 지역 |
|---|---|---|---|---|---|---|---|---|---|---|
| 2013 | 1,485 | 6 | | | | 226 | | 42 | 2 | 20 |
| 2014 | 1,209 | 10 | | | | 180 | | 63 | 4 | 7 |
| 연도별 | 농업 | 산림 | 건설 | 도시 | 교통 | 건축 | 해양 | 보건 | 상하수도 | 기타 |
| 2013 | 22 | 86 | 158 | 557 | 9 | 163 | 166 | 8 | 18 | 2 |
| 2014 | 13 | 97 | 125 | 360 | 23 | 163 | 128 | 9 | 22 | 5 |

## 라. 온라인 민원처리 확대

### (1) 어디서나 민원(fax) 발급제도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민원24』(www.minwon.go.kr)내에 별도로 구축한 업무처리시스템으로 민원인이 증명·처리기간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팩스,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 등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교부를 받을 수 있는 민원발급제도이다.

취급민원은 민원24 온라인 민원발급사무 확대로 317종까지 확대 운영하다가 현행 119종으로 축소되었으며, 발급시간을 현행 3시간 이내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 처리하여 주고 있다. 우리시에 어디서나 민원 발급실적은 다음과 같다.

**FAX민원 발급처리 실적**

(단위 : 건)

| 연도별 | 계 | | | 본 청 | | 읍면동출장소 | |
|---|---|---|---|---|---|---|---|
| | 계 | 교부 | 처리 | 교부 | 처리 | 교부 | 처리 |
| 2013 | 3,987 | 2,381 | 1,606 | 373 | 1,085 | 2,008 | 521 |
| 2014 | 2,553 | 2,207 | 346 | 365 | 285 | 1,842 | 61 |

### (2) 전자민원『민원24』시스템 구축

각 부처의 민원을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5,000여종의 민원안내와 구비서류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으며, 3,000여종의 서류를 확대 가능한 모든 민원을 온라인하여 오고 있다.

인터넷민원 발급을 위한 준비사항으로는 금융거래용『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즉시발급민원의 확대로 온라인 민원신청은 현저히 확대되고, 어디서나(FAX) 민원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시의 민원24 신청현황은  다음과 같다.

**민원24 발급처리 실적**

(단위 : 건)

| 연도별 | 민원24 (온라인) | 창구민원발급 | | | 온라인 신청률 (%) |
|---|---|---|---|---|---|
| | | 계 | 주민등록시스템 | 새올행정시스템 | |
| 2013 | 70,629 | 111,580 | 95,459 | 16,121 | 38.76 |
| 2014 | 103,467 | 112,337 | 95,026 | 17,311 | 47.94 |

### (3)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인 제출서류 최소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보훈, 병무, 법무 등 32개 보유기관의 147종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공무원이 직접 전자적으로 열람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용대상정보현황을 민원실 및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이 상호 정보공유를 해 왔고, 민원인이 민원서류 제출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였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정보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총 계 | 공동이용 대상정보 | | | | | | |
|---|---|---|---|---|---|---|---|---|
| | | 지방세 | 사업자 등록증명 | 국세납세 증명 | 자동차세 납세 | 폐업사실 증명 | 등기정보 열람 | 기타 (건축물 대장외) |
| 2013 | 92,835 | 98 | 184 | 21 | 1 | 95 | 30,469 | 61,967 |
| 2014 | 47,589 | 24 | 446 | 5 | 1 | 149 | 24,028 | 22,936 |

## 마.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성실 이행

2000.6.29일 1차 개정 공표되어 운영중인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하여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전자민원창구 시스템 운영사항, 행정정보공개 처리절차,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증명민원(FAX민원 신청 외 15종)의 법정처리 시간보다 20%이상 단축 운영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였고, 이행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하여 2004년도 개정 공표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만족사항 등 민원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헌장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 제2절 지적·토지관리 행정

## 1. 지적제도의 연혁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창설하기 위하여 1910년 8월에 토지조사법을 제정한 후 약 40년만인 1950.12.1.(법률 제165호)에 총 41개 조문의 지적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전까지 시행한 지적법과 지세법을 분리 제정하고 조선지세령, 조선임야대장규칙을 폐지하였다.

제정된 지적법은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정리를 각각 서로 다른 법령에서 수행하던 것을 일괄 수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18여회에 걸쳐 법령이 개정되어 오다가 측량·수로업무 및 지적분야의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를 통합하고자 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던 주소가 각종 도시개발과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위치 정보의 정확성이 저하되므로 지번주소체계가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국민들이 주소와 건물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존 토지지번 주소체계에서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물에 번호를 부여하고,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새로운 주소체계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하고자 2006.10.4.(법률 제8027호) 지적법에서 개정 삭제하고,「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체계가 도로명주소로 전면 전환하여 2014.1.1일 부터 도로명주서(새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되어 사용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지적업무의 소관이 행정자치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령 및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어 구)건설교통부의 측량법, 해양수산부의 수로업무법, 행정자치부의 지적법으로 분산, 운영되어온 국토조사측량관련 3개법을 통합한「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9.06.09(법률제9774호) 시행하게 되었다.「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국민생활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며, 각종 행정절차와 지도공급 및 복제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를 통해 위치기반 서비스를 융합한 측량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측량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지적 및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지적행정시스템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로 통합하여 분야별로 나뉘어 처리하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처리할수 있게 되었으며 15종의 부동산 관련 종합증명서와 개인 맞춤형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 2. 지적공부 등록 현황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하고 등록된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지적공부는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소유권 등이 등록되어 있다.

**지목별 등록현황**

| 구 분 | 합 계 | 전 | 답 | 대 | 공장용지 | 임 야 | 도로용지 | 기 타 |
|---|---|---|---|---|---|---|---|---|
| 지번수 | 146,154 | 35,951 | 14,895 | 20,732 | 215 | 28,782 | 28,001 | 17,578 |
| 면 적 (㎢) | 1186.53 | 56.59 | 15.42 | 7.85 | 0.93 | 1,045.18 | 17.59 | 42.97 |
| 비율 (%) | 100 | 4.76 | 1.30 | 0.66 | 0.08 | 88.10 | 1.48 | 3.62 |

**행정구역별 등록현황**

| 구분 / 읍면동 | 합 계 | | 토 지 | | 임 야 | |
|---|---|---|---|---|---|---|
| | 지번수 | 면적(㎢) | 지번수 | 면적(㎢) | 지번수 | 면적(㎢) |
| 합 계 | 146,154 | 1186.533 | 115,901 | 137,882 | 30,253 | 1,048,651 |
| 도계읍 | 15,842 | 164.726 | 12,225 | 17.416 | 3,617 | 147.310 |
| 원덕읍 | 26,397 | 176.112 | 21,943 | 21.154 | 4,454 | 154.958 |
| 근덕면 | 29,838 | 133.672 | 23,983 | 25.216 | 5,855 | 108.456 |
| 하장면 | 13,798 | 205.714 | 10,398 | 21.868 | 3,400 | 183.846 |
| 노곡면 | 9,696 | 144.707 | 6,920 | 8.700 | 2,776 | 136.007 |
| 미로면 | 15,141 | 99.423 | 11,608 | 13.788 | 3,533 | 85.635 |
| 가곡면 | 5,879 | 152.429 | 5,068 | 6.987 | 811 | 145.442 |
| 신기면 | 6,610 | 56.31 | 5,385 | 6.544 | 1,225 | 49.766 |
| 성내동 | 8,475 | 22.681 | 6,287 | 5.850 | 2,188 | 16.831 |
| 교 동 | 5,004 | 9.554 | 3,768 | 3.837 | 1,236 | 5.717 |
| 남양동 | 6,573 | 18.19 | 5,586 | 4.702 | 987 | 13.488 |
| 정라동 | 2,901 | 3.015 | 2,730 | 1.820 | 171 | 1.195 |

**대장 현황**

(단위 : 매)

| 구 분 | 합 계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경계점좌표등록부 |
|---|---|---|---|---|
| 합 계 | 160,058 | 124,267 | 34,312 | 1,479 |
| 대 장 | 147,633 | 115,901 | 30,253 | 1,479 |
| 공유지연명부 | 12,415 | 8,366 | 4,059 | 0 |

**도면 현황**

(단위 : 매)

| 구 분 | 합 계 | 지적도 | 임야도 | 비 고 |
|---|---|---|---|---|
| 합 계 | 4,402 | 3,866 | 536 | |
| 도 면 | 4,113 | 3,581 | 532 | |
| 일람도·색인표 | 289 | 285 | 4 | |

## 3. 지적민원 처리

삼척시의 지난 2년간 지적민원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에 7,029건, 보존·이전등 소유권 변동 정리에 30,139건, 대장등본 및 열람발급에 30,13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른 제증명 및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는 19,494천원에 이르고 있다.

**토지이동 정리**

(단위 : 지번수)

| 연도별 | 계 | 분 할 | 합 병 | 지목변경 | 기 타 |
|---|---|---|---|---|---|
| 2013 | 3,241 | 1,488 | 332 | 495 | 1,376 |
| 2014 | 3,788 | 1,585 | 506 | 788 | 909 |

**소유권변동 정리현황**

(단위 : 건수)

| 연도별 | 계 | 보 존 | 이 전 | 기 타 |
|---|---|---|---|---|
| 2013 | 15,512 | 496 | 5,464 | 9,552 |
| 2014 | 14,627 | 596 | 6,441 | 7,590 |

**등본 및 열람발급 실적**

(단위 : 건, 천원)

| 연도별 | 계 | 대 장 | 도 면 | 기 타 | 수수료 | 비 고 |
|---|---|---|---|---|---|---|
| 2013 | 28,131 | 12,777 | 14,152 | 1,202 | 10,622 | |
| 2014 | 21,621 | 9,240 | 12,052 | 329 | 8,872 | |

## 4.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

토지행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지적제도의 질적 향상과 토지의 다목적 정보화를 필요로 하는 추세에 맞춰 1983년부터 지적전산 운영체제를 도입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89년부터 온라인망을 통하여 전국의 모든 토지(임야)대장을 전산화 하였으며, 지적행정시스템의 운영체제를 2001년 5월도스(DOS) 시스템에서 윈도우즈(Windows)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자료 검색 및 변동자료 정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원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읍·면·동사무소에서 토지(임야)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적도면을 과거에 종이로 작성되어 사용하던 것을 전산도면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게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1999년~2003년까지 추진하여 4년간 지적도면 총 3,888매를 2003년 10월말까지 자료입력을 완료하고, 2004년부터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도면전산화가 구축됨에 따라 토지와 관련된 기본정보와 정책정보 자료 제공 등 관련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회구조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부동산 가치의 상승에 따른 종합적인 토지정보 제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구축 하였고 지적행정에서 창구민원인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과 토지행정에서 창구민원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을 통합 발급하여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분산되어 관리되던 부동산 관련 공부들을 일원화 하여 부동산 융합 행정을 실현하고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하였다. 2011년 의왕, 김해 등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 위험 요소를 제거하였고, 2012년 지적과 건축물 분야의 11종 증명서를 먼저 통합하여 시스템을 전국에 설치하고 KLIS와 병행운영한 후 2013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등 총 15종의 증명서를 통합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을 실시하였다.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2013.07.17 개정 공포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4.01.18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전환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안정적인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를  조기에 안정화 하였다. 기존에 사용하던 지적행정시스템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공부관리의 일원화를 이루고 업무의

추진도 빨라졌다.

병행운영 실시 기간을 두어 기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전량 병행처리 하였으며 병행운영 실적을 국토교통부 사업단에서 취합·분석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이중 확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 시스템내 구축 D/B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2014.01.18 정상적인 실제 운영 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 **운영전환 세부계획**

| 구 분 | 일 정 | 수행내역 | | 담 당 |
|---|---|---|---|---|
| **1단계 병행운영** | '13.9.9 ~'14.1.17 | 지적업무 100% 병행운영<br>* 기존 : 지적행정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br>* 병행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 시군구 업무담당자 |
| | | 업무처리현황 모니터링 | 전국 일일자료 취합 모니터링 | 국토교통부(사업단) |
| | | | 일일마감 모니터링 | 시군구 업무관리자 |
| | | 일사편리 콜센터 운영 | | 사업단 |
| **2단계 병행운영** | '13.11.11 ~'14.1.17 | 연속지적도, 용도지역, 가격업무 100% 병행운영 | | 시군구 업무담당자 |
| | | 부동산종합증명서 온라인 시범발급 ('13.12.2~) | | 사업단 |
| | | 온라인 통합민원창구 17개 기관 실운영 ('13.12.2~) | | 사업단 |
| | | 업무처리현황 모니터링 | 전국 일일자료 취합 모니터링 | 국토교통부(사업단) |
| | | | 일일마감 모니터링 | 시군구 업무관리자 |
| | | 일사편리 콜센터 운영 | | 사업단 |
| **실운영 전환** | '13년 11월 | 운영전환 안내 (온나라 포털 등 활용) | | 사업단 |
| | '13년 12월 | 시군구 환경점검 | | 국토교통부 |
| | | 모의전환 실시 | | 사업단, 유관기관 |
| | '14년 1월 | 시스템 점검 | | 사업단 |
| | | 통합지적, 연속지적도, 용도지역 관리 실운영 개시 | | 시군구 업무담당자 |
| | | 실운영 전환 확인서 제출 | | 시군구 |
| | '14년 7월 | 가격관리업무 실운영 개시 | | 사업단 |
| | | 실운영 전환 확인서 제출 | | 시군구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능 구성**

| 프로그램 | 기능 구성 |
|---|---|
| 1. 토지이동 | 토지이동접수, 지적공부정리관리, 토지이동정리, 변동자료정비, 민원접수현황관리, 대단위토지이동, 지적재조사 관련 |
| 2. 측량업무 | 지적측량업무관리, 바로처리센터 연계, 지적측량성과관리 C/S 등 |
| 3. 소유권변동 | 소유권개별처리, 대법원등기연계 등기변경자료 관리 |
| 4. 종합공부조회 | 토지(임야)기본조회, 지적기준점, 도곽, 지적공부오기정정, 건축물정보조회, 통계관리, 정책지원 등 |
| 5. 건물통합 | 건물통합정보 등록/수정/삭제, 건물위치 통합정보 관리 등 |
| 6. 창구민원관리 | 토지(임야)대장 발급 및 열람, 인터넷 민원접수현황관리 |
| 7. 비법인관리 | 등록번호별등록사항조회, 등록증명서발급, 등록사항변경, 단체현황조회, 민원접수내역조회 등 |
| 8. 시스템관리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권한관리, 코드/연계관리, 로그관리, 사용현황관리 등 |
| 9. 부가기능 | 운영지원센터, QnA, FAQ, 공지사항 |

2)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지적관련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 훼손 방지 및 토지관련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적 문서 전산화사업을 실시하여 지적원부 408,925매(부책식대장 116,023매, 카드식대장 146,451매)를 예산 115백만원을 투입하여 2005년도에 완료하였고,

토지이동결의서외 7종 및 지적측량 결과도에 대한 전산화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2008년~2014년까지 7개년에 걸쳐 전산D/B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전산화사업 이후 매년 생산된 문서에 대하여 예산확보를 통한 지속적으로  전산D/B를 구축하여 지적문서통합시스템에 탑재 운영함으로써 열람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으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다.

**지적문서 전산화**

(단위 : 매)

| 구 분 | 2012년 이전 | 2013년 | 2014년 | 비 고 |
|---|---|---|---|---|
| 계 | 50,476 | 10,960 | 8,065 | 매년 생산된 지적문서는 이듬해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 |
| 토지이동결의서 외 7종 | 24,091 | 9,750 | 5,985 | |
| 지적측량결과도 | 26,385 | 1,210 | 2,080 | |

## 5.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① "지적재조사사업"이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임.

② 관련 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정 2011.09.16 (법률 제11062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3666호

③ 특별법 제정 목적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④ 지적재조사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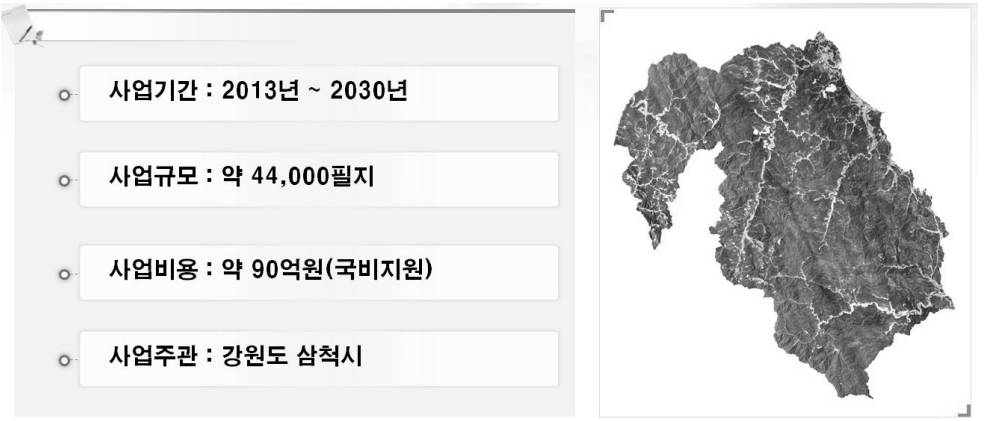


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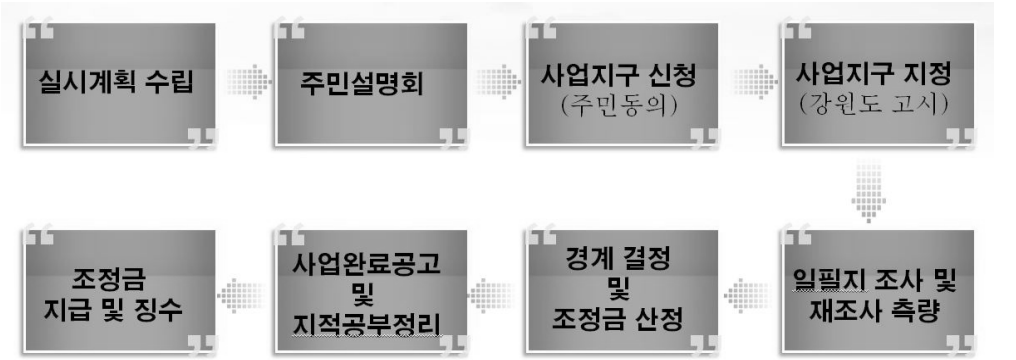

⑥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 순번 | 지구명 | 소재지 | 고시년도 | 필지수 | 소유자수 | 사업완료(예정)연도 | 기타 |
|---|---|---|---|---|---|---|---|
| 1 | 대기지구 | 신기면 대기리 | 2012 | 128 | 41 | 2014 | 완료 |
| 2 | 남양지구 | 남양동 | 2013 | 40 | 23 | 2015 | 진행 |
| 3 | 매원지구 | 근덕면 매원리 | 2013 | 48 | 23 | 2015 | 완료 |
| 4 | 주지1지구 | 노곡면 주지리 | 2013 | 63 | 12 | 2015 | 완료 |
| 5 | 주지2지구 | 노곡면 주지리 | 2013 | 258 | 80 | 2015 | 완료 |
| 6 | 우지지구 | 우지동 | 2015 | 109 | 78 | 2017 | 착수 |
| 7 | 차구1지구 | 도계읍 차구리 | 2015 | 42 | 10 | 2017 | 착수 |
| 8 | 차구2지구 | 도계읍 차구리 | 2015 | 222 | 66 | 2017 | 착수 |

## 6.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

① "지적공부(地籍公簿)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 변환(變換) 사업"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측량기준 규정에 의거국제 표준의 측량이 가능하도록 우리나라의 위치를 도면상에 변환 등록하는 국가사업임.

②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
- 사업규모 : 약 99,000필지
- 사업비용 : 약 1,500백만원
- 사업주관 : 강원도 삼척시
- 사업내용 : 지적(임야) 도면 등록 경계 좌표변환

③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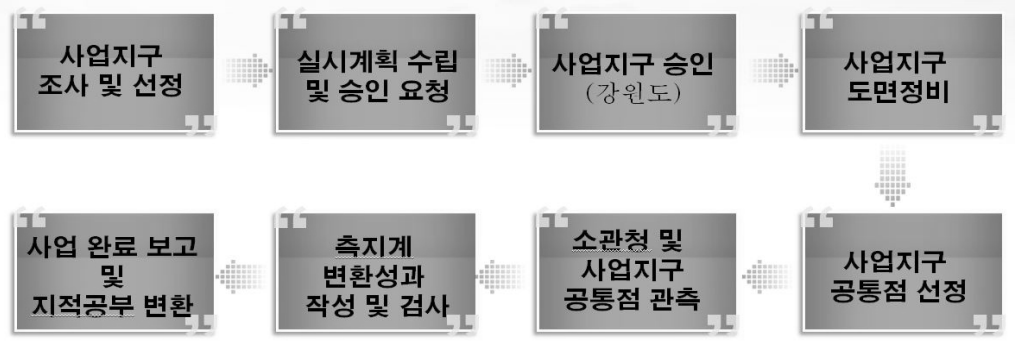

④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 현황

| 순번 | 지구명 | 수치 도해 | 소재지 | 필지수 | 축척 | 사업완료 (예정)연도 | 기타 |
|---|---|---|---|---|---|---|---|
| 1 | 교·정라지구 | 수치 | 교 동<br>정라동 | 439 | 1:500<br>1:1000 | 2014 | 완료 |
| 2 | 남양사대지구 | 수치 | 남양동 | 257 | 1:500 | 2014 | 완료 |
| 3 | 사직·남양지구 | 수치 | 사직동<br>남양동 | 123 | 1:1000 | 2014 | 완료 |
| 4 | 증산지구 | 도해 | 증산동 | 453 | 1:1000<br>1:6000 | 2014 | 완료 |
| 5 | 건지·원당지구 | 수치 | 건지동<br>원당동 | 61 | 1:500 | 2015 | 완료 |
| 6 | 도계지구 | 수치 | 도계읍<br>일원 | 3 | 1:500 | 2015 | 완료 |
| 7 | 동지역 | 도해 | 동지역<br>전 체 | 21,681 | 1:600<br>1:1200<br>1:6000 | 2015 | 착수 |

⑤ 특이사항

당초 좌표변환 소요 추산 비용(약 15억원)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추진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용 대부분(약 13억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추진.

## 7. 도로명주소(새주소) 부여사업

### 가. 배경

현재의 지번방식 주소체계는 1910년대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에 의한 주소방식으로 경제개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으로 위치정보의 정확성이 저하되어 지번주소체계는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계 공통의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나. 추진현황

도로명주소(새주소) 부여를 위하여 2002년부터 우리시 동지역의 도로명주소 구축작업이 시작되었으며, 2010년까지 읍면지역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였고,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시 전역에 걸쳐 402개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대로 1개, 로 44개, 길 357개의 노선을 확정하였고, 현재까지 건물은 18,532개의 번호를 부

여하여 도로명주소(새주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11. 7. 29. 도로명에 따른 건물번호를 전국 일제고시하고 법정주소로 전환하여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주소의 전환을 진행하였고 민간부문의 주소전환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의 생활 속 체감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다. 향후 계획

도로명주소법에 의하여 2014. 1. 1부터 도로명주소(새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도로명주소의 시민생활 속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활용중심”의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세주소 제도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100년만의 주소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 8. 지리정보(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관리

### 가. 지리정보 시스템 도입배경

지리정보체계구축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도시종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시에서도 도시기반시설물의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와 전산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도시종합정보의 체계적, 장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생활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나. 지리정보 시스템(S/W) 도입내역

| 구분 | UIS시스템 | 공간정보안내시스템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
|---|---|---|---|
| 시스템 |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br>시설물관리번용시스템<br>기준점관리시스템<br>인트라넷시스템<br>생활공간정보시스템 | 공간정보안내시스템<br>(시,읍면동 13개<br>설치 운영)<br>※UIS 서버 연계<br>운용 |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
| 업무성격 | 행정업무활용(내부용) | 공간정보<br>제공(대민용) | 중앙-지자체간<br>공간정보 공유(내부용<br>및 대민용) |

## 다. 공간정보(도로 및 지하시설물)DB구축 현황

※ 비도시 지역은 현재 DB 미구축

| 구분 | 사업물량 (단위:Km) | | | | 사업비 (백만원) | 사업기간 |
|---|---|---|---|---|---|---|
| | 계 | 도로 | 상수 | 하수 | | |
| 계 | 1,331.25 | 524.89 | 286.04 | 520.32 | 5,062 | 2006.12.14. ~ 2010.01.08 |
| 1차년 사업 | 148.84 | 35.54 | 43.97 | 69.33 | 765 | 2006.12.14. ~ 2007.06.12 |
| 2차년 사업 | 239.84 | 59.23 | 69.13 | 111.48 | 1,600 | 2007.07.06. ~ 2008.09.18 |
| 3차년 사업 | 275.83 | 111.97 | 47.83 | 116.03 | 800 | 2008.04.11. ~ 2008.12.31 |
| 4차년 사업 | 666.74 | 318.15 | 125.11 | 223.48 | 1,897 | 2009.01.20. ~ 2010.01.08 |

공간정보(도로 및 지하시설물)본사업 DB구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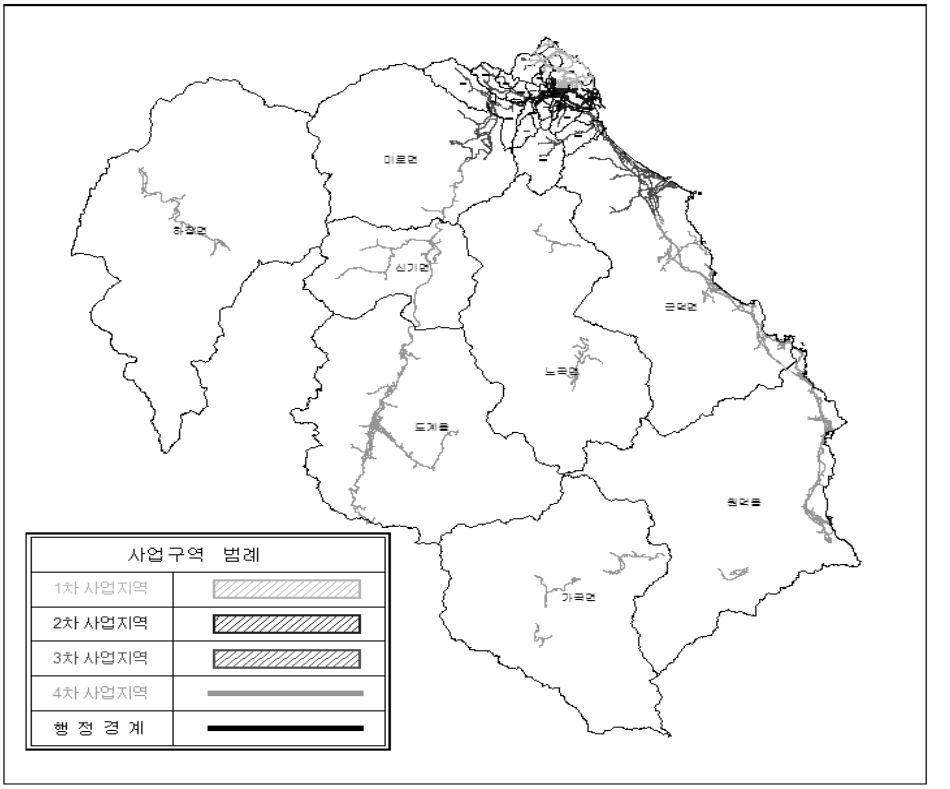

## 라. 공간정보(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갱신 현황

| 구분 | 사업물량 (단위:Km) | | | | | 사업비 (백만원) | 사업기간 |
|---|---|---|---|---|---|---|---|
| | 계 | 도로 | | 상수 | 하수 | | |
| | | 전수조사 | 신규 (보완) | | | | |
| 2010년 사업분 | 28.46 | - | 4.01 | 7.46 | 16.99 | 140 | 2011.01.18. ~2011.08.08 |
| 2011년 사업분 | 24.16 | - | 8.11 | 9.01 | 7.04 | 130 | 2011.08.12. ~2012.02.10 |
| 2013년 사업분 | 14.65 (94.77) | 94.77 | 10.18 | 2.70 | 1.77 | 129 | 2013.01.23. ~2013.10.18 |
| 2014년 사업분 | 37.786 (300.00) | 300.00 | 35.546 | 1.954 | 0.286 | 200 | 2014.06.26. ~ 시행중 |

공간정보(도로 및 지하시설물)DB 갱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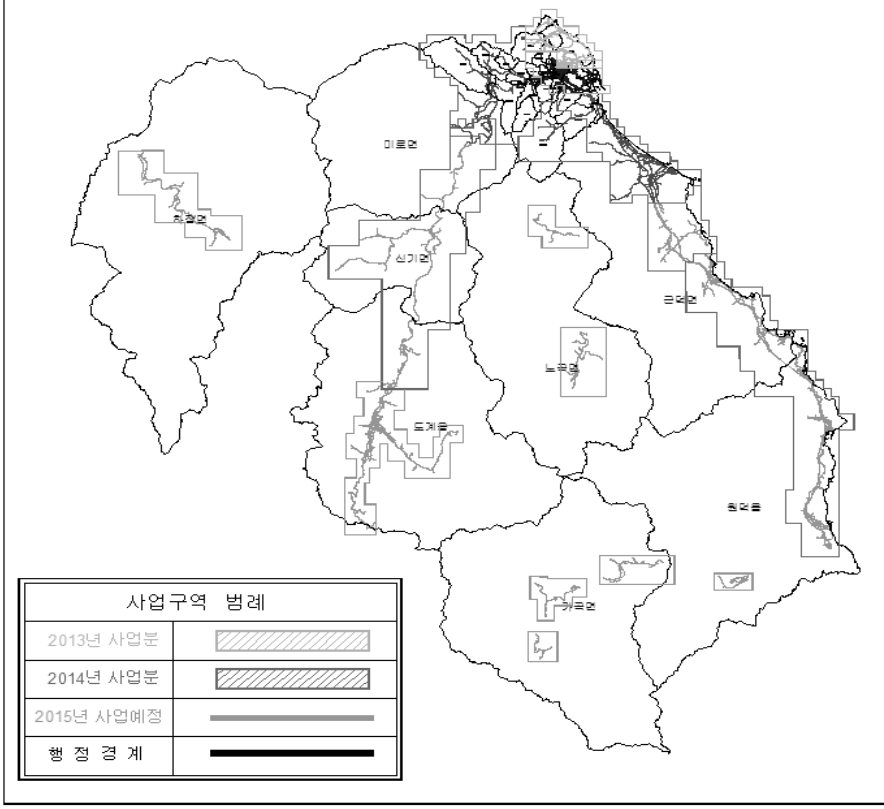

## 9.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2012.02.22 법률 제11363호) 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986.10.01부터 2006.12.31까지 3차례 3년동안 한시적으로 제정되어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혜택을 보았으며, 이번에는 2012. 05. 22부터 ~ 2017. 05. 21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으로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타법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있어 소유권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할수 있게 되었다.

적용 대상토지의 조건으로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이어야하며, 제출서류로는 공유토지분할 신청서,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 이다.

해당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또는 소제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정한 업무처리 및 공유자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할 및 청산을 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및 취득세(등록세)만 납부하면 지적소관청에서 무료로 등기촉탁을 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은 등기수수료 및 비용을 절약할수 있다. 우리시는 그동안 22건 70필의 토지를 분할함으로써 토지소유자 58명이 약 21,000천원을 절감하는 혜택을 받았다.

○ 처리현황

| 구분 | 분할신청 | 개시결정 | 분할결과 | 소유자수 | 면적(㎡) | 비고 |
|---|---|---|---|---|---|---|
| 처리실적 | 22건<br>22필 | 22건<br>22필 | 22건 70필 | 58명 | 14,868 | |
| 등기촉탁 | - | 22건 | 78건<br>(지목변경포함) | 58명 | 14,868 | |

## 10.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

1989년 토지공개념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토지는 자연적, 인문

적 특성에 의해 균형가격의 성립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일반토지거래의 지표와 보상, 조세부과 등의 기준이 되게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제도이다.

종전의 공시지가 체제는 건설부의 기준지가,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및 재무부의 감정지가 등 부처별로 행정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해 다원화된 공시지가 체제였다.

그 결과 상호 연계성이 결여되어 객관적인 가격수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관된 지가정보의 구축이 어렵고, 기관별로 지가를 조사·평가함에 따라 인력 및 재정낭비를 가져왔으며, 동일토지에 대하여 지가가 상이하여 공적지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웠으나, 종전 지가체제를 통합하기 위하여 '89.4.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하게 되었다.

그 후 2005.1.1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일관성 있는 지가조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읍·면·동별 지가조사체제에서 1997.7.15. 시체제로 전환하여 지적과 토지관리부서에서 지가조사를 전담하여 전문성과 지가의 균형유지 및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현재는 1999.9.17 행정기구 개편으로 민원과와 지적과를 통합하면서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부서에서 지가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 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대표성, 중용성, 안전성, 확정성이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다.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반적 토지거래의 지표로 지가정보를 제공,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시 전체 조사대상 필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규모 및 용도지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 비교가 용이하도록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표준지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목별 표준지 분포현황**

(단위 : 필지수)

| 연도별 | 계 | 전 | 답 | 대 | 임야 | 기타 |
|---|---|---|---|---|---|---|
| 2013 | 2,041 | 695 | 278 | 645 | 393 | 30 |
| 2014 | 2,041 | 702 | 272 | 645 | 389 | 33 |

**용도지역별 표준지 분포현황**

(단위 : 필지수)

| 연도별 | 계 | 도 시 지 역 | | | | 비 도 시 지 역 | | | |
|---|---|---|---|---|---|---|---|---|---|
| | | 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 | 관리 | 농림 | 자연환경보전 | 미지정 |
| 2013 | 2,041 | 334 | 108 | 50 | 273 | 983 | 254 | 39 | 0 |
| 2014 | 2,041 | 336 | 108 | 49 | 274 | 989 | 248 | 37 | 0 |

## 나.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의 차이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상의 배율을 적용·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전에는 매년1회 1.1. 기준으로 당해연도 6.30. 결정고시 하였으나, 2000년부터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6.30. 결정고시하고,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이 발생된 필지에 대하여 7.1.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10.31. 결정고시하게 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자로 변경하여 결정 고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부과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필지는 우리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하나 표준지와 도면 미복구된 토지 등은 제외시킨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필지 현황**

(단위 : 필지수)

| 연도별 | 전 체 (A) | | | 조사대상(B) | | | 비율 B/A | 비고 |
|---|---|---|---|---|---|---|---|---|
| | 계 | 사유지 | 국·공유지 | 계 | 사유지 | 국·공유지 | | |
| 2013 | 144,915 | 95,400 | 49,515 | 142,679 | 93,551 | 49,128 | 98.4 | |
| 2014 | 145,587 | 95,621 | 49,966 | 143,346 | 93,812 | 49,534 | 98.4 | |

토지(임야)대장, 도시관리계획 등 공적규제에 관한 공부 및 기타자료를 확인하고 현지를 답사하여 조사대상토지의 특성을 정확히 조사한다. 산정의 기준이 되

는 비교표준지를 선택하고 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 필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서 가격배율을 추출하고 비교표준지 가격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한다.

개별토지의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지가열람 및 의견청취를 20일 동안 실시한다. 산정 및 검증필지에 대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날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지가를 확정한다.

## 1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대상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모든 부동산이다.

**용도지역별 부동산거래 신고현황**

(단위 : 천㎡)

| 연도별 | 계 | | 주거지역 | | 상업지역 | | 공업지역 | | 녹지지역 | | 지역외 | |
|---|---|---|---|---|---|---|---|---|---|---|---|---|
|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 2013 | 3,697 | 9,660 | 1,283 | 307 | 163 | 23 | 26 | 17 | 327 | 683 | 1,898 | 8,630 |
| 2014 | 4,635 | 11,373 | 1,844 | 304 | 173 | 17 | 59 | 70 | 537 | 1,655 | 2,022 | 9,327 |

**지목별 부동산거래 신고현황**

(단위 : 천㎡)

| 연도별 | 계 | | 전·답 | | 대 | | 임야 | | 공장용지 | | 기타 | |
|---|---|---|---|---|---|---|---|---|---|---|---|---|
|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 2013 | 3,697 | 9,660 | 1,325 | 1,654 | 1,318 | 253 | 837 | 7,565 | 4 | 7 | 213 | 181 |
| 2014 | 4,635 | 11,373 | 1441 | 1665 | 1872 | 325 | 1080 | 9259 | 4 | 14 | 238 | 110 |

## 12. 개발이익환수제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서 불로 소득과 이를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1990.1.1.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경기활성화 및 준조세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제정(2001.12.31, 법률 제6589호)할 당시 동법 부칙으로 비수도권은 2002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중지하도록 규정하였다.

2005년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와 저금리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 등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고자 부과 중지중에 있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기로 하였다. (8. 31부동산종합대책)

2002년 1월 1일 이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경우는 2004년 1월1일 이후)인가 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법률 제6589호, 2001. 12. 31)관련조항(부칙 제2조)을 삭제,

2006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징수 하도록 함(부칙 제2조) <2005.12.07 법률 제7,709호에 의한 개정>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온천이나 골프장 건설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지목 변경사업등 약30개사업으로 사업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이다.

사업 종료시점의 땅값에서 사업 착수시점의 땅값과 정상지가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의 25%가 부담금으로 부과되는데,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다.

## 13. 검인계약서제도

미등기 전매 등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할때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하여 거래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검인계약서제도는 '78.12.06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행을 하

지 못하고 있다가 88년 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현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14.07.29.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현황**

| 구분 | 합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신고 | 1,766 | 108 | 135 | 151 | 169 | 145 | 168 | 153 | 126 | 147 | 155 | 157 | 152 |
| 검인 | 736 | 43 | 55 | 50 | 63 | 63 | 52 | 58 | 59 | 72 | 72 | 79 | 70 |

**2014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현황**

| 구분 | 합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신고 | 1,958 | 122 | 148 | 168 | 216 | 181 | 170 | 166 | 174 | 142 | 165 | 177 | 129 |
| 검인 | 1,200 | 62 | 64 | 78 | 107 | 152 | 201 | 211 | 63 | 67 | 87 | 44 | 64 |

# 제3절 민방위 행정

## 1. 민방위 조직 및 편성

### 가. 민방위 조직

지방단위 민방위 조직은 도의 비상기획과에 위기관리부서가, 시에는 안전총괄과내 민방위부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민방위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민방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어 도지사 소속하에 도 민방위협의회를, 시장 소속하에 시 민방위협의회를, 읍면동장 소속하에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도 민방위협의회는 10인 이상 15인내로 구성하여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시 민방위협의회는 7인 이상 12인내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는 5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 읍면동장이 위원장이 된다. 주요 기능은 도 및 시 민방위협의회에서는 민방위 계획의 심의와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기타 민방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 나. 민방위 편성

**(1) 편성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하며 17세 이상의 남녀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다. 20세~25세 남자중에서 민방위대 편성이 제외되는 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당연 제외자와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의 심의에 의한 제외자로 구분한다. 법령에 의한 당연 제외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찰, 소방공무원, 학생, 군인, 향토예비군 등이 있으며 심사제외자로는 의사의 진단에 의한 심신장애자와 만성허약자 등이 해당한다.

**《 민방위대편성 현황 》**

(단위 : 대, 명)

| 연도별 | 계 | | 통리지역대 | | 기술지원대 | | 직장대 | |
|---|---|---|---|---|---|---|---|---|
| | 대수 | 대원수 | 대수 | 대원수 | 대수 | 대원수 | 대수 | 대원수 |
| 2013 | 208 | 4,448 | 180 | 3,511 | 1 | 43 | 27 | 894 |
| 2014 | 207 | 4,557 | 179 | 3,534 | 1 | 77 | 27 | 846 |

### (2) 편성기준

민방위대의 조직은 통·리 단위와 직장 단위로 각각 편성하고 민방위 기술지원대는 수방, 의료, 전기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 등 기술을 가진 민방위대원 중에서 읍면동장 및 직장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발한 자로 편성한다.

민방위대는 대원수에 따라서 편성기준을 달리 하고 있으며, 29인 이하는 분대, 30~80인 이하는 소대, 81~300인 이하는 중대, 301~1,000인 이하는 대대로 편성하였다. 통·리단위로 편성되어 있다.

**《 통·리민방위대 편성현황 》**

(단위 : 대, 명)

| 연도별 | 대 수 | 대원수 | 규 모 별 현 황 | | | | | |
|---|---|---|---|---|---|---|---|---|
| | | | 계 | 30인 이하 | 31~50 | 51~100 | 101~300 | 300인 초과 |
| 2013 | 180 | 3,511 | 180 | 153 | 17 | 9 | 1 | - |
| 2014 | 179 | 3,534 | 179 | 152 | 19 | 7 | 1 | - |

직장민방위는 직장의 사무소 또는 사업단위로 편성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로써 조직하고, 직장 민방위대장은 당해 직장의 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며,

시청의 직장민방위 대장은 민방위사태 발생시 사태수습을 위해 총괄적인 행정을 수행해야 하므로 부시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 직장민방위대 편성현황 》**

(단위 : 명, 대)

| 연도별 | 대 수 | 대원수 | 규 모 별 현 황 | | | | | | | |
|---|---|---|---|---|---|---|---|---|---|---|
| | | | 계 | 30인 이하 | 31~50 | 51~100 | 101~300 | 301~500 | 501~1000 | 1000 초과 |
| 2013 | 27 | 894 | 27 | 18 | 4 | 3 | 2 | - | - | - |
| 2014 | 27 | 846 | 27 | 17 | 3 | 5 | 2 | - | - | - |

민방위 기술지원대는 창설 당시 읍면동 단위로 구성하였으나 기술지원대의 전문성을 살리고 활동면에서도 광역화하여 시 단위로 재구성하였으며, 규모는 지역특성을 고려 50~100명 선으로 구성하고 편성 인원은 다음과 같다.

《 기술지원대 편성현황(기능별) 》

(단위 : 명)

| 연도별 | 계 | 소화 | 상황전파 | 복구 | 인명구조 | 화생방 | 비상대피통제 | 안전사고 | 위험지구예찰 | 기타 |
|---|---|---|---|---|---|---|---|---|---|---|
| 2013 | 43 | 7 | - | - | 7 | 18 | 6 | 4 | - | 1 |
| 2014 | 30 | 13 | 8 | - | 12 | 20 | 10 | | | 14 |

《 민방위대원 연령별 현황 》

(단위 : 명)

| 연도별 | 계 | 20세 이하 | 21세~25세 | 26세~30세 | 31세~35세 | 36세~40세 | 41세~50세 |
|---|---|---|---|---|---|---|---|
| 2013 | 4,448 | 8 | 42 | 110 | 1,680 | 2,127 | 481 |
| 2014 | 4,457 | 15 | 70 | 130 | 1,686 | 2,047 | 509 |

## 2. 을지연습 운영

### 가. 을지연습

전시대비 충무계획을 검토하고 시행절차를 숙달함으로써 비상사태시 전시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각 기능별 위기관리 능력강화 및 군·관 협조하에 전쟁수행 체계 확립과 시민에 대한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실시하고 있다.

《 을지연습 사건처리 현황 》

(단위 : 건)

| 연도별 | 처리건수 | 사태별 자동조치 | 중앙사건 처리 | 도사건 처리 | 자체사건 처리 | 비 고 |
|---|---|---|---|---|---|---|
| 2013 | 101 | - | - | - | 101 | |
| 2014 | 97 | - | - | - | 97 | |

### 나. 실제 훈련상황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 시 직원의 시간대별 응소 능력을 점검하였고, 비상발령 후 시간대별 가로등 소등, 차량통제, 주민대피, 화재진압, 환자수송 등에 6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전시대비훈련과 위기대응훈련을 병행실시함으로써 돌발적인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실시되었으며,

또한,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사태시 대응능력 및 민·관·군 공조체제를 확립하였다.

## 3. 민방위 교육훈련

### 가. 민방위 교육

#### (1) 민방위 교육목표

민방위대원교육은 민방위대원이 민방위 비상사태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신교육 및 제반 실기 지식과 활동 요령을 습득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민방위 대원에게 국가 안보의식 제고 및 통일대비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와 실기실습을 통한 재난대처 능력을 중점적으로 배양하고, 국가 안보관의 확립을 통한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민방위교육의 기본목표이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연구원 주관하에 실시하는 중앙단위 교육과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단위 교육으로 나누어진다.

#### (2) 민방위중앙교육

후방방위와 재난수습을 위한 정예 민방위 간부요원의 양성을 목표로 민방위 정신전력의 강화를 위한 국가관 확립과 안보의식 고취, 사태 대응능력 배양을 위하고 민방위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정보와 지식기술의 보급에 목표를 두고 있다.

**《 2014년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교육이수 현황 》**

(단위 : 명)

| 교육과정별 | 교육인원 | 교육과정별 | 교육인원 |
|---|---|---|---|
| 계 | 12 |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 5 |
| 지원민방위대 과정 | 5 |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 2 |

#### (3) 지방단위교육

◉ 기본교육 체계

민방위기본법상 법정교육시간은 연 10일간 50시간의 범위 내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운영은 민방위 편성후 1~4년차 대원에 대하여 연차별로 매년 4시간씩 4년간 이수하게 되어 있다.

◉ 기본교육 실적

민방위교육은 일반대원교육, 민방위대장교육, 전문요원교육으로 나누어지고, 일반대원 교육은 통·리민방위대원과 직장민방위대원이 해당되고, 민방위대장 교육은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장이, 전문요원 교육은 기술지원대와 화생방분대원이 이에 해당된다.

**《 민방위대원 교육실적 》**

(단위 : 명)

| 연도 | 구분 | 교육대상(명) | 참 석 실 적(명) | | | | 불참(명) | 참석율 |
|---|---|---|---|---|---|---|---|---|
| | | | 계 | 기본 | 1차보충 | 2차보충 | | |
| 2013 | 계 | 3,619 | 3,614 | 2,817 | 468 | 329 | 5 | 99.9% |
| | 집합교육 | 1,410 | 1,408 | 1,101 | 468 | 112 | 2 | 99.9% |
| | 비상소집훈련 | 2,209 | 2,206 | 1,716 | 273 | 217 | 3 | 99.9% |
| 2014 | 계 | 3,381 | 3,378 | 2,592 | 458 | 328 | 3 | 99.9% |
| | 집합교육 | 1,358 | 1,356 | 1,035 | 194 | 127 | 2 | 99.8% |
| | 비상소집훈련 | 2,023 | 2,022 | 1,557 | 264 | 201 | 1 | 99.9% |

◉ 교육내용

민방위대원의 교육 내용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이 있다. 소양교육은 국민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과제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국가관, 안보관의 확립과 국민정신 함양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실기 교육은 자연재난, 인위재난, 생명구호, 전시대비 등 유사시의 사태수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

◉ 민방위강사 위촉

소양강사는 도지사 또는 시장이 위촉하여 민방위대원교육에 활용하고 있고, 민방위강사의 자질 및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매년 중앙단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민방위강사 위촉현황 》**

| 구 분 | 소 속(주 소) | 성 명 | 위촉년도 | 분 야 별 | 비고 |
|---|---|---|---|---|---|
| 실기교육 | 삼척소방서 | 유영민,심규삼<br>김진성,윤수호<br>김이구,장바우<br>최광석,한미진<br>김흥석,윤윤균<br>한미진,윤수호<br>김진협,서정일 | 2013년<br>~2014년 | 재난안전예방대응<br>심폐소생술 | |
| 화생방교육 | 23사단 화학지원대 | 조성일,김태양<br>배영규,박종민<br>이미화 | " | 화생방 | |
| 기타 | 국민연금공단<br>삼척지사 | 박용빈 | 2013 | 노후준비필요성 | |
| 안보 | 국가발전미래교육<br>협의회 강원지회 | 김나영.최연희<br>주혜련,조병호<br>임용화,전혜숙<br>이인호 | 2013년<br>~2014년 | 안 보 | |

## 나. 민방위의 날 훈련

매년 3~4회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은 적의 침공이나 각종 자연적·인위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예상 사태에 대응역량을 배양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의 침공과 각종 재난에 대처하고 자율적으로 국력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한편 나아가 전 국민의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여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으로 생활민방위 구현을 해나가고 있다.

### (1) 훈련시기

민방위의 날 훈련은 정기적으로  년3~4회의 지정한 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15일이 토요일이면 금요일, 15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 실시하였다.

### (2) 훈련구분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훈련과 방재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여 국가적 사회 대응력을 제고시켰으며, 훈련실시 지역내 제방위요소와 직장·지역 민방위대가 통합 참여하는 민방공 훈련을 실시하였다.

### (3) 종목별 훈련실적

민방위의 날 훈련은 크게 전국 훈련과 지방단위 훈련이 있으며, 전국 공통은 민방공대피훈련, 불시훈련을 실시하고 지역단위 특성은 전시대비 훈련과 재난대비훈련으로,

전시대비훈련은 지역·직장 방호훈련, 주민신고훈련, 화생방 방호훈련과 재난대비 훈련은 풍수해, 해일, 산불진화, 설해대비 훈련 등 자연재난대비 훈련과 단전·단수, 통신두절 대비 및 다중 집합장소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사태대비 능력을 제고하였다.

**《 2014 민방위 날 훈련실적 》**

(단위 : 회)

| 훈련종목별 | 실시회수 | 훈 련 내 용 |
|---|---|---|
| 민방공 대피훈련<br>재난대비훈련<br>가족단위비상대응훈련<br>화재대피훈련 | 4 | -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소방차 길터주기 훈련<br>- (자연재해, 인위재난)대비 지역특성화 훈련<br>- 아파트거주민 가족단위 민방공대피훈련<br>- 다중이용시설.업소 대상 화재대피 훈련 |

#### 4) 훈련분위기 조성

민방위의 날 훈련시에는 시범가로에 민방위기를 게양하였으며 지역·직장 민방위대에서는 민방위 훈련에 따른 현수막 및 입간판을 게첨하고 라디오, 유선방송, 마을앰프, 직장구내방송 등을 활용, 훈련계도 방송으로 홍보를 실시하며 시민들의 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4. 주민신고망 운영

### 가. 주민신고의 개념

주민신고란 사회를 혼란시켜 우리의 안정된 생활을 파괴하려는 간첩, 무장 게릴라, 거동수상자와 범죄자, 각종 민생치안사범, 법질서 및 각종재해 등 모든 사회적 위험요소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그 피해를 사전에 막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와 무질서를 추방하여 국력의 낭비를 막는 국민 각자의 중요한 자율활동이다.

### 나. 주민신고망 현황

#### 1) 기본신고망

도시지역은 반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농어촌 지역은 자연마을 단위로, 직장은 직장민방위대와 예비군을 편성단위로 하여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 2) 이동신고망

일정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근무하는 우편집배원, 도로 하천 감시원, 운전사, 산림 감시원, 외판원, 청소원 등을 이동신고요원으로 위촉 활동하고 있다.

#### 3) 고정신고망 및 특별관리망

시장·상가·유원지 등 다중집합장소와 대중이용업소·집단하숙지역은 고정신고망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특히 주민신고 취약지역인 대공취약 지역에는 특별관리망으로 운영하고 있다.

【 주민신고망 현황 】

2014년말 기준

| 계 | 기본신고망 | 특별신고망 | 이동신고원 | 고정신고원 |
|---|---|---|---|---|
| 1,224 | 843 | 102 | 165 | 114 |

## 5. 민방위 시설물 관리

### 가. 민방위 대피시설

민방위 대피시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지하실,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분되며, 관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45개소로 72,145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

**《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

(단위 : ㎡, 명)

| 구분 \ 위치별 | 계 | 공 용 | 민 간 |
|---|---|---|---|
| 시 설 수 | 45 | 9 | 36 |
| 가용면적 | 59,520 | 4,812 | 54,708 |
| 수용가능 인 원 | 72,145 | 5,833 | 66,312 |

### 나. 비상급수시설

비상급수 시설은 적의 화생방 공격시 식수 및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며, 민방위 지정 비상급수시설은 5개소로 1일 970톤을 생산할 수 있다.

**《 비상급수시설 현황 》**

| 계 | | 음용수 | | 생활용수 | |
|---|---|---|---|---|---|
| 확보개소 | 확보톤수 | 확보개소 | 확보톤수 | 확보개소 | 확보톤수 |
| 5 | 970 | 4 | 770 | 1 | 200 |